

1. 개정 이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복청구 신청서 서식 및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 및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복청구 서식 대리인 기재란 보완(안 제35조·제36조·제37조, 별지 제53호·제56호·제59호서식)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 서식의 대리인 정보 작성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 대리인 구분란을 추가

나.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보완(안 제38조, 별지 제60호서식)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란 추가

다.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361호서식 개정 및 제437호서식 신설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귀화자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과세 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정보 현행화에 활용

라.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0조제1항,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규정 및 신고서식 내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입법예고 전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6호서식까지”를 “제437호서식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항,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에 번호 30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5	영 별표 3 제3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별지 제437호 서식
-----	--------------	---	-------------

별지 제53호서식, 제56호서식, 제59호서식, 제60호서식, 제361호서식, 제4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수행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변 호 사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배 우 자 등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 통지기관						
	② 통지받은 연월일						
	③ 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 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 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가.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 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 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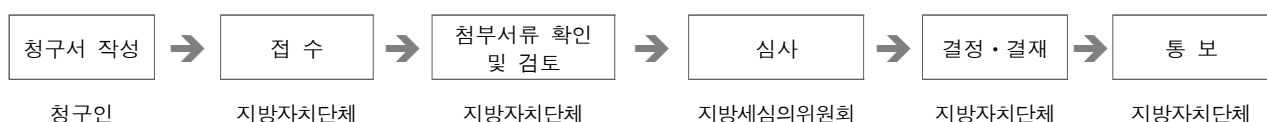
1. 청구내역

- ① 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② 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 ④ 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 ⑤ 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2. 제출기관

- ①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④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대 리 인	사 업 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수 행 자	번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전자우편주소	
	배우자 등 []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신청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	--	-----------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1.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 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가. 2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 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 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이의신청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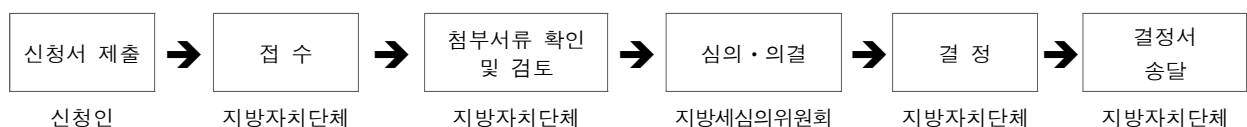
1. 신청내용

- ①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②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 ④ 불복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2. 제출기관

- ①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④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처리절차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대 리 인	사 업 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수 행 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변 호 사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배 우 자 등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	---	--------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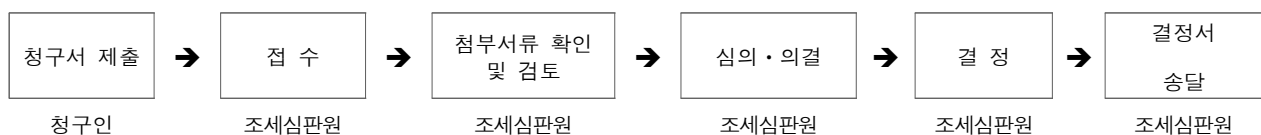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청구내용

-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⑦ 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의견진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건번호 (접수번호)		
의견진술 신청인	성명(법인명)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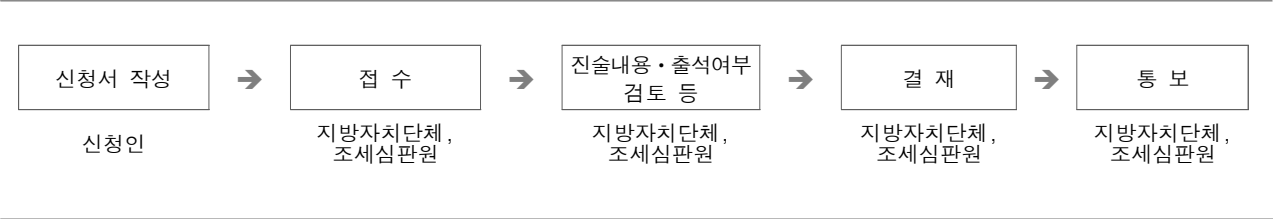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illegible]

210mm×297mm (백상지 80g/㎡)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관련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받은 자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u>제436호서식</u> 까지에 따른다. ② (생략)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 ----- ----- ----- <u>제437호</u> <u>서식</u> 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u>제4항</u> , <u>제6항</u>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② (생략)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 ----- <u>제4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1